

[제 1362 호]

2017년 4월 4일(화)

고양시보



차 례

입법예고

고양시 공고 제2017-601호	고양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	1
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고 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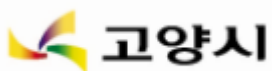
고양시 고시 제2017-114호	한국국제전시장1단계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정정 고시	7
----------------------	--	---

고양시 고시 제2017-115호	고양 도시관리계획(대화 지구단위계획 구역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	8
----------------------	--	---

공 고

고양시 일산동구 공고 제2017-203호	신조 공인 공고	9
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	---

Goyang City



| 발행 : 고 양 시 | 편집 : 공보담당관 |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.
 | (우) 1046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(주교동 600) | ☎ (031) 8075-2095

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

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「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」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년 4월 4일

고 양 시 장

1. 자치법규명 : 고양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2. 개정이유

- 시대변화에 맞추어 내용을 현실화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.

3. 주요골자

- 가. 시대변화를 반영하여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의 종류 중 “공중전화 카드” 를 “온누리상품권” 으로 수정함.(안 제2조제2항, 제3조제2항 및 별표)
- 나.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업무는 시와 「고양시 사무위임 조례」 및 「고양시 사무위임 규칙」에 따라 구에서 처리하는 사무로써 보상 주체 규정의 의미가 없어 이를 삭제함.(안 제2조제3항)

4. 자치법규안 : 별첨

5.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6. 의견제출

가. 제출기일 : 2017년 4월 24일까지

나. 제출방법 : 서면·우편·인터넷 등

다. 기재내용 : 주소·성명·연락전화번호·의견

라. 제출기관 : 고양시장 (환경보호과)

- 주 소 :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(주교동)
- 전 화 : 환경보호과 대기관리팀(031-8075-2654)
- 팩 스 : 031-8075-4924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 : 고양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 조례 시행규칙
일부개정규칙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규칙안 내용	의 건	비 고

고양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고양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고양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 조례」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조례 제2조제2항”을 “「고양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2조제2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공중전화카드”를 “온누리상품권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공중전화카드”를 “온누리상품권”으로 한다.

별표의 비고 중 “공중전화카드”를 “온누리상품권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	소관과	환경보호과
입안자	담당관 성명	환경보호과장 한찬희
	팀장 성명	대기관리팀장 류제일
	담당자 성명·전화	이동건 (031-8075-2654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1조(목적)</u> 이 규칙은 「고양시 환경오염 행위 신고 보상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에서 위임한 사항과 <u>이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<u>제2조(보상금 등의 지급대상)</u> ① <u>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</u> <u>정당한 신고인에 대한</u> <u>보상금의 지급은</u> 폐수 무단방류, 공장굴뚝 매연, 악취, 공사장 먼지발생, 유독물 유출 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자로 제한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신고에 대한 점검결과 위반사항은 없으나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정당한 신고 또는 기타 환경보전에 기여한 신고로 인정될 경우에는 보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1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, 문화상품권, <u>공중전화카드</u> 등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③ 「고양시 사무위임 조례」 및 「고양시 사무위임 규칙」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당한 신고인에 대한 보상은 구청장의 요청에 의해 시장이 한다.</p> <p>④ (생략)</p> <p><u>제3조(보상금의 지급절차)</u> ① (생략)</p> <p>② 보상금의 지급은 신고인의 은행계좌로 무통장입금하고 도서상품권, 문화상품권, <u>공중전화카드</u> 등을 지급하는 때에는 우편으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신고인의 은행계좌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무통장입금 또는 우편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.</p>	<p><u>제1조(목적)</u> 이 규칙은 「고양시 환경오염 행위 신고 보상 조례」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<u>제2조(보상금 등의 지급대상)</u> ① 「고양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2조제2항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 <u>온누리상품권</u>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3조(보상금의 지급절차)</u>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</p> <p>.....</p> <p><u>온누리상품권</u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

현행	개정안
<p>[별표]</p> <p>적절하지 않은 경우</p> <p>1. ~ 10. (생략)</p> <p>비고 :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(도서상품권, 문화상품권, <u>공중전화카드</u> 등을 포함)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</p>	<p>[별표]</p> <p>적절하지 않은 경우</p> <p>1. ~ 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비고 :</p> <p>.....</p> <p><u>온누리상품권</u></p> <p>.....</p>

한국국제전시장1단계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정정고시

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306번지 일원의 한국국제전시장 1단계 지구단위계획(E2-1블럭)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기결정된(고양시 고시 제2017-39호)사항 중 현황분할측량결과 오차가 발생하여 정정 고시합니다.

2017. 4. 4.
고양시 장

▣ 도시관리계획(한국국제전시장 1단계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조서

1. 용도지역 및 구역결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(변경없음)
2.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(변경없음)
3.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(변경)
 - 가.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조서

○ 국제전시장

가구 번호		면적 (㎡)	획지			비고
			위치	면적(㎡)	대지분할 또는 합필(공동건축)	
기정	E2-1 (대화동 2307-2)	7,170.0	-	7,170.0	-	부대시설
변경	E2-1 (대화동 2307-2)	7,169.6	-	7,169.6	-	부대시설 (현황측량 결과반영)

※ 변경사유 : E2-1, E2-2 지적분할을 위한 현황측량시 오차발생

- 나.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(변경없음)

고양시 고시 제2017-115호

고양 도시관리계획(대화 지구단위계획 구역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1. 고양 도시관리계획(대화 지구단위계획 구역)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항이 있어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(변경) 하고 같은법 제32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계획과(031-8075-3066)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2017. 04. 04.

고 양 시 장

□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1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조서
 - 변경 없음
2. 용도지역·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·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 - 변경 없음
3.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
가. 교통시설

1) 도로

-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면적(㎡)				기능	연장(m)	기점	종점	사용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				
기정	소로	2	359	8~10	국지 도로	390	중로3-96 대화동 894-3	중1-104 대화동 1913-73도	일반도로	-	-	일산구역에 1,493㎡포함
변경	소로	2	359	4~10	국지 도로	390	중로3-96 대화동 894-3	중1-104 대화동 1913-73도	일반도로	-	-	일산구역에 1,493㎡포함

- 결정(변경) 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소로2-359	소로2-359	· 도로 선형변경 - 폭원 : 4~10m 연장 : 390m	· 현황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도시계획시설(도로) 선형 변경



4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 - 변경 없음
5.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 - 변경 없음

□ 결정도면 : 게재 생략

공 고

고양시 공인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조 및 등록 신청한 공인을 동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. 신조 공인명 : -고양시일산동구청장인 (풍산동전용2)
-고양시일산동구풍산동장인 (민원사무전용2)
2. 신조 사유 : 통합 인증기 신규 구입
3. 신조공인의 최초사용일 : 2017. 4. 19.
4. 공고기간: 2017. 4. 4. ~ 2017. 4. 18.
5. 신조 공인의 이름 및 인영

구분	공 인 명	서체 및 규격 (cm×cm)	인 영
신조	고양시일산동구청장인 (풍산동전용2)	한글전서체 (2.1×2.1)	
신조	고양시일산동구풍산동장인 (민원사무전용2)	한글전서체 (2.1x2.1)	

2017. 4. 4.

고양시 일산동구청장



